

졸업종합시험 운영규정

전문제정 2019.05.22. 개정 2020.01.21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31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졸업종합시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졸업종합시험이라 함은 전공교과 시험을 말한다.

제3조 (대상학과)

졸업종합시험은 간호학과, 보건의료행정과만 실시한다.<개정 2020.01.21.>

제4조 (자격요건)

- ① 졸업종합시험 응시 자격요건은 졸업 최종학기에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신청한 자로 한다.<개정 2020.01.21.>
- ② 졸업종합시험에서 불합격한 자에게는 1회에 한해 재시험의 기회를 줄 수 있다.

제5조 (졸업종합시험)

졸업종합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한다.

1. 시험은 전기와 후기로 시행하되 전기졸업 예정자중 탈락자가 없을 경우에는 후기는 시행하지 않는다.
2. 시험에 대한 공고는 시험개시 30일전에 홈페이지와 해당 학과 게시판에 공지한다.
3. 시험내용은 졸업종합시험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과목별 배점은 100점으로 한다.
4. 졸업종합시험 대상학과는 졸업종합시험 응시학기가 시작된 후 2주 이내에 응시자 명단을 교무팀에 제출해야 한다.
5. 졸업종합시험의 결과는 시험실시 이후 1주 이내에 성적 처리한 후 그 결과를 교무팀에 통보하고 학과장은 해당 학생에게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6조 (합격처리기준)

졸업종합시험의 합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각 과목별 40점 이상 취득한 자
2. 전체 과목 평균이 60점 이상 취득한 자

제7조 (불합격자 기준)

졸업종합시험의 불합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 규정 제6조 1호와 2호를 모두 충족하지 못한 자
2. 시험 중 부정행위로 적발된 자

3.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자

제8조 (불합격자 처리)

졸업종합시험 불합격자는 졸업학점을 취득했다라도 졸업탈락하며 수료증을 발급한다.
또한 다음 학기에 실시하는 졸업종합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제9조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졸업종합시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2019.05.22.)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0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이전에 시행되었던 졸업시험 운영규정은 이 규정의 시행일부터 폐지한다.

제3조 (자격요건의 취득 학점에 대한 경과조치)

2019학년도 이후 복학생 및 재입학생은 해당학년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2020.01.2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